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. 20 선고 2022가단2653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1. 20.

주 문

1.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5. 17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계약을 8,082,1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,082,144원과 그 중 1,829,119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
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성용

별지

- 1) 청구취지 제1항 중 'E'은 'D'의 오키이다.